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97
----------	------

발의연월일 : 2017. 2. 13.

발의자 : 윤영일 · 신용현 · 위성곤
정재호 · 김삼화 · 정인화
황주홍 · 주승용 · 강창일
조배숙 · 김종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도
지사로 하여금 시·도별 발전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도 발전계획은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
충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설정에 있어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지나,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향후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
해서는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 발전계획에 직전 시·도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직전 시·도 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도 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생 략)</p> <p><u><신 설></u></p> <p>2. ~ 8.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직전 시·도 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u></p> <p>2. ~ 8.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